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가합548236 판결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이진성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김용국, 최두영

4.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나세근

변론 종결2020. 11. 18.

판결 선고2021. 1. 27.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608,923원 및 그 중 261,169,353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8. 7. 19.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7. 19. 접수 제272199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2019. 3. 26.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4. 접수 제119756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3. 10. 1.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12. 7. 20.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A과 거래관계에

있다.

나. 원고와 피고 A, B 사이의 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A, B와 사이에, 원고가 보증금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고,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손해금 등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된 부대채무를 변제하며, 피고 B은 피고 A의 위와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보증약정을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보증약정서(갑 제1호증의1, 2)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피고 A)은 기보(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기보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제11조(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6. 6. 21. 피고 A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일반자금 대출금 175,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157,500,000원, 채무최고액은 204,750,000원, 보증기한은 2017. 6. 21.로 정하여 보증서(보증번호 F)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E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175,000,000원의 일반자금 대출을 받은 후 보증기한을 2019. 6. 21.로 변경하였다(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3) 또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6. 6. 21. 피고 A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일반자금 대출금 125,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10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7. 6. 21.로 정하여 보증서(보증번호 G)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E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125,000,000원의 일반자금 대출을 받은 후 보증기한을 2019. 6. 21.로 변경하였다(이하 '2차 대출'이라 하고,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연체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9. 4. 9.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5. 7. E은행에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한 후 2019. 6. 28. 피고 A을 대위하여 E은행에 1차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159,651,337원(원금 157,500,000원 + 이자 2,151,337원)과 2차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101,518,016원(원금 100,000,000원 + 이자 1,518,016원)을 변제하였다.

(2) 한편, 위 대위변제는 보증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 만료일 다음날인 2019. 6. 22.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19. 6. 27.까지의 추가보증료 76,180원(1차 대출 추가보증료 46,600원, 2차 대출 추가보증료 29,580원)과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 1,363,390원(1차 대출 법적절차비용 977,680원 + 2차 대출 법적절차비용

385,71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2. 1.부터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금율을 연 10%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피고 B은 2011. 10.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7. 19.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7. 19. 접수 제272199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또 피고 B은 2019. 3. 26.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D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피고 A로 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4. 접수 제119756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2차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지급 청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금과 그와 관련된 부대채무 합계 262,608,923원(1차 대출금 대위변제금 159,651,337원 + 2차 대출금 대위변제금 101,518,016원 + 추가보증료 76,180원 + 법적절차비용 1,363,390원) 및 그 중 위 각 대위변제금을 합한 261,169,353원(1차 대출금 대위변제금 159,651,337원 + 2차 대출금 대위변제금 101,518,01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9. 12. 13.까지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의 피고 A 또는 피고 B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3. 원고의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2019. 4. 9.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피고 C과 사이에 2018. 7. 19.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② 피고 D과 사이에 2019. 3. 26. 2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고, 피고 C,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가) 피고 C은 피고 A의 자금유동성 해결을 위하여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왔는데, 피고 B은 2018. 7.경 피고 C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 C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유예받음과 동시에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나) 피고 A은 2019. 4.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는데, 피고 C은 2018. 7.경 피고 B으로부터 1차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당시 피고 A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 C은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 또는 피고 B의 채무초과 사실 및 1차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3) 피고 D 피고 D은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차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 당시 피고 A 또는 피고 B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차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2) 피고 A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19. 4. 9.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원고가 2019. 6. 28. 피고 A을 대위하여 E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보증약정은 피고 A 또는 피고 B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할 경우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A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2018. 7. 19. 체결되기 전인 2018. 1.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H, 청구금액 167,206,801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단11640호)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피고 A 또는 피고 B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③ 그리고 실제로 피고 A은 2019. 4. 9.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사해행위의 인정여부

(1)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1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인 2018. 7.경 당시 시가 272,500,000원의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① 주식회사 H이 2018. 1.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 167,206,801원의 가압류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단11640호)를 마친 사실, ②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30.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2012. 2. 22. 채권최고액 94,800,000원의, 2014. 10. 29. 채권최고액 21,600,000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 B이 2017. 7. 1.부터 2020. 8. 28.까지 K은행에 대하여 합계 33,000,000원의 채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27,57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은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272,5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가압류 청구금액,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K은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액, 이 사건 구상금 채무액 등을 고려하면1),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있고,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272,500,000원인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차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J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188,400,000원인 점, 1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20,000,000원인 점에 비추어2),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서 J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1차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피고 A 또는 피고 B 측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으니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 C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새로 설정된 담보권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앞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그에 기한 등기가 말소되었거나 채권자가 선순위 담보권과 후순위 담보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나) 갑 제8,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차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인 2019.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272,5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차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J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188,400,000원이고 1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2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2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액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2차 근저당권 설정계약 또한 위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와 같이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 C, D의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피고 C,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고 2018.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 A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 C과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에서 1차 근저당권의 설정과 관련된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 D의 2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1달 전에 체결되었다.

④ 피고 D은 이 사건 소송에서 2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 12.경 피고 A 측에 미수금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피고 D의 2020. 6. 23.자 준비서면), 2차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차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성철

판사천무환

판사강면구

별지

1) 위와 같은 가압류청구금액,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K은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합하면 합계 678,785,724원(① 주식회사 H의 가압류 청구금액 167,206,801원 + ② J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88,400,000원 + ③ K은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합계 60,570,000원 + ④ 이 사건 구상금 채무 262,608,923원)에 이르게 된다.

2)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주식회사 L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 청구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